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40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만희·김기웅·박성민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김선교 · 강선영 · 조은희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 항).
- 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3 항).
- 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4항).
-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4항).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자"를 "자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3.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	제53조(벌칙) ①
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u>자</u> 는 7	<u>자 또</u>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처한다.	<u>지른 자</u>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u><삭 제></u>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③
지른 자는 <u>1년</u> 이상 10년 이하	<u>3년</u>
의 징역에 처한다.	<u>.</u>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4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	
을 때에는 <u>2년</u> 이상 10년 이하	<u>5년</u>
의 징역에 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	<u>해당하는</u>
<u>손한</u>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신 설>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5. (생략)
-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

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 기구를 날린 자
- 3.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 3 -----
- 1. ~ 1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기구를 날린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 ⑤・⑥ (생 략)

4
<u>50만원</u>
1. ~ 3. (현행과 같음)